



# 기능 · 역할 유지하며 유사관련 기능 통합에 역점 뒤

정부 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그 소속 기관의 직제가 개편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는 1차관보, 1실, 6국, 5관, 24과, 16담당관에서 1차관보, 1실, 6국, 4관, 25과, 8담당관으로 축소됐다. 농촌진흥청은 2국, 2관, 16과에서 2국, 2관, 15과로 축소됐다. 또 산하기관도 12기관 75과 17지소 9출장소에서 12기관 71과 16지소 6출장소로 감축됐다.

농림부의 경우 이번 조직개편은 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지 않은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이 체제가 불완전체제가 아닌 완전체제로 이어져야만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내비쳐지고 있다. 농림부는 농산원예국만 폐지하고 그 산하과는 식량생산국과 농산물유통국으로 이관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조정에서 초점을 두고 유사

기능과 관련기능을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평이다.

## 농림부

농산원예국 · 식량정책국을 '식량생산국'으로 통합  
농산정책과는 '농산과'로, 생산지원과는 '농업기계자재과'로 개칭

1국이 폐지됨에 따라 농산원예국과 식량정책국을 통합해 식량생산국으로 개편하고 원예국의 농산정책과와 환경농업과가 식량생산국으로 이전하면서 농산정책과가 농산과로 개칭됐다. 이에 따라 원예국에서의 과수채소에 대한 업무 기능 등은 농산물유통국(전 유통정책국)의 유통정책과에서 수행한다. 또 채소특작과와 과수화훼과는 농산물유통국으로 이전됐다.

이와함께 식량관리과는 식량생산국의 식량정책과에 흡수

되고 유통관리과도 농산물유통국의 유통정책과와 식품산업과로 그 기능이 이관돼 2개과가 축소됐다. 또 공보, 감사, 비상계획, 농업정보통계담당관 등 4개 담당관의 자리가 폐지됐다. 또 농업정책국의 농지관리과가 농지과로, 식량생산국의 생산지원과가 농업기계자재과로, 농산물유통국의 가공산업과가 식품산업과로, 개발기획과가 개발정책과로 명칭이 개칭됐다. 이같은 명칭의 개칭과 과 축소로 그 기능 변경과 인원 축소가 전망된다.

##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신설, 기술보급국은 '기술지원국'으로 개칭

농약품질과는 '농약안전성과'로 통합

해외병해충과는 '식물검역소'로 이관

기술보급국이 기술지원국으로 개칭되면서 기술연수과는 한국농업전문학교로 이관했다. 연구관리국의 연구협력과와 연구조정과를 연구운영과로 통합하고 농업자원과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1개과 이전과 2개과 통합, 1개과 신설로 1개과가 축소됐다. 또 농업경영개선담당관을 경영개선담당관으로, 농업통계분석담당관을 기술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산하기관중 농업과학기술원은 환경관리과와 농업생태과를 환경생태과로 통합하고 농약안전성과와 농약품질과를 농약안전성과로, 환경곤충과와 잠업기술과를 잠사양봉과로 통합했다. 작물시험장은 작물환경과와 품질이용과를 작물환경과로 통합했다. 또 농업과학기술원의 해외병해충과를 농림부 식물검역소로, 유전자

원과는 종자관리소로 각각 이관했다.

한편 원예연구소 제주감귤연구소는 제주농업시험장으로 이관했다. 이와함께 작물시험장 남양출장소와 지부출장소, 호남농업시험장의 운봉출장소를 폐지했다. 그러나 종자관리소의 4개지소는 2000년에 이관 폐지된다.

그리고 농과원의 소재이용과는 곤충이용과로 변경하고 농업기계화연구소 농기계품질과를 시험평가과로, 원예연구소 저장이용과를 품질보전과로, 고령지농업시험장의 감자과를 작물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본청과 산하기관의 인원은 2백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열려

## 파라코 액제

# “오·남용 방지위한 안전관리 방안 강구”

시험결과 안전성 문제 없어 - 물량감축 해제

토양잔류성농약 여부로 논란이 계속돼 왔던 비선택성초제제 파라코(그라목손)액제가 토양잔류성농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는 7월 5일 서규용농촌진흥청

차장 주재로 농림부, 환경부 관계관과 대학교수 및 소비자대표 등 15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이 농약의 주성분

인 파라콰트의 반감기가 비록 180일이 넘지만 후작물에 잔류되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또한 국내 토양중 검출량이 최대 흡착능력의 0.5~0.7%에 불과하며 토양이동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토양잔류성농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여 라벨표기방법 개선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강구 하도록 했다.

이날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농약관리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농약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신설하고 등록기준도 국내합성원제와 수입원제를 통합하여 관리토록 했다. 또한 농약품목을 등록할 때는 인축독성 및 환경생물독성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으며 모리네이트(Molinat)성분에 대하여는 2002년에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약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신설

농약원제 관리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적용이 배제되고 농약관리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유독성원제에 대한 저장, 보관 및 운반관리와 독성정도별 취급제한기준 등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준용하여 새로 정하였다.

원제를 취급하는 사람은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시설과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고 용기와 운반차량에는 규정에 따른 유독성원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제가 유출되었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방환경관서, 보건소 등 가까운 유관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또 원제를 제조할 때는 유출, 폭발, 화재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토록 하고 작업장에 보관하거나 사업장에 진열할 때는 필요한 최소량만 유독성원제 표시가 잘 보이도록 하여 보관, 진열하여야 한다. 저장·보관

할 때 취급자는 저장시설·장비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용기는 가능한한 밀폐상태로 보관한다. 보관창고는 환풍,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하여 "원제 창고"임을 표시하고 식료품, 의약품, 사료 등을 함께 보관해서는 안된다. 운반할 때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운반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켜 상수원보호구역의 우회, 과적방지, 식·의약품 및 사료 등과 혼적금지 등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회 운송량이 500kg이상일 때는 운전자 및 호송자가 통과할 도로, 가까운 행정기관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휴대전화 등 신속한 신고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한편 유독성원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유독성원제를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유독성원제에 관한 표시를 하는 때에는 건강장해물질·환경유해물질·물리적위험물질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농약 품목등록 신청서류 검토 및 농약시료 검사기준

신규품목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중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시험을 수행한 공시약제는 최종시험으로 한정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시료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농약을 등록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에 환경생물독성시험성적서를 추가하고 인축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환경생물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성관리를 강화하였다.

## 농약 원제 등록기준

농약원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수입원제와 국내합성원제 구분을 없앴으며 이미 등록된 원제를 복제품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신규원제를 등록

할 때 제출하는 독성시험성적중 아급성을 제외한 급성독성과 변이원성시험성적을 제출토록 하였다. 또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 원제는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하고 독성시험 중 잉어를 이용한 어독성시험이 곤란할 경우에는 송사리 또는 금붕어로 시험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후 1년 이내에 잉어를 이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 부정·불량농약 처리요령

약효보충기간이 끝난 농약이나 다시 제조하여 사용이 가능한 불량농약의 재제조는 농약제조업

자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완제품의 국내 재제조는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요령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농업관련 학과 졸업자”로 확대하여 참여 폭을 넓혔다. 교육시간은 18시간 이상으로 규정해 종전보다 4시간 늘리고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결과 60점이상 받은 사람에게만 교육이수증을 주도록 하여 교육의 질과 농약판매업 관리인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3

## 7월부터 달라지는 관련법령 시행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운증제 등 특수제형, 원제어독성 고려해 제품 어독성 구분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미생물농약 성적서 일부 면제

농림부는 미생물농약과 미생물농약의 원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안전성이 높은 친환경농약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농약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훈증제, 훈연제, 연무제 등과 같이 급성어독성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제형은 앞으로 원제의 어독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어독성을 구분·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취급제한기준에는 원제의 저장, 보관 및 운반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세부취급제한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또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이나 보관토록했다.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최초 등록 후 15년이 지난 품목 중 국제기구 등에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안전성을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해당 제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또

한 농약의 안전성관리에 관한 지문을 담당하는 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은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5인을 추가하여 11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이 맡도록 했다. 한편 농약원제관리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농약관리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약원제를 유독성원제와 보통독성원제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내용 객관적 증명자료 필요 명백한 부당 표시면 임시중지명령

사업자가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광고실증제 등을 규정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에 관한 표시나 광

고를 할 때 학계나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조사한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실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며 명백히 부당한 표시·광고로 의심되

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긴급하게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나 광고에 관한 실증자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 실증결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부적합 농산물 구체적 처리방법 알려야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기방법 등 설정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수산물품질인증기준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과 유전자 변형 표시 농수산물의 표시기준을 정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기준을 정하는 한편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관계 장관은 기본방향,

대상지역, 대상품목 및 대상유해물질 등을 포함하는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수산물은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생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원산지표시는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산 또는 생산 시·군명이나 해역, 수입농산물에는 대외무

역법에 따른 원산지, 가공품에는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한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 농수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인간의 유전자를 동·식물에 도입한 농수산물등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 등에서 관계 장관이 정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을 때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아정보**